

유망 기술·서비스등 사업화 지원 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하고,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2개월 이내
신청인	기업체명	기업 유형	개인 [], 법인 []
	대표자명	설립연월일	
	사업자등록번호	전화번호	
	공장등록번호	팩스번호	
신청내용	사업화 유망 기술·서비스등 명칭		
	사업화 기관	사업화 책임자	
	사업화 기간	부터	까지(년 개월간)
	유망 기술·서비스등 개발 투자액(단위: 천원)	사업화 투자액(단위: 천원)	
지원요청 내용	유망 기술·서비스등의 품질인증 획득 지원		
	유망 기술·서비스등 및 경영상의 고충 해소 지원		
	연구개발 및 사업화 자금 지원(금액 및 사유)		
	창업 및 홍보지원		

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19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망 기술·서비스등의 사업화 지원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7호서식의 유망 기술·서비스등 사업화 내용서 2. 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8호서식의 유망 기술·서비스등 사업화 실적 및 투자계획서 3. 해당 유망 기술·서비스등을 생산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서	수수료 없 음
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

처리절차

